

의안번호	제 101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
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3월 8일

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8일
발의자 : 김영주, 정상교, 최경천,
김국기, 박성원, 임동현,
이수완

1. 제안 이유

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재단 설립 목적(안 제1조)

나. 재단의 설립 등(안 제2조)

다. 재단의 사업(안 제3조)

라. 정관 및 이사회 등(안 제4조, 제5조)

마.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(안 제7조)

바. 예산·결산, 지도·감독·검사 등(안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

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단의 설립 등) ①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2.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
3.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4.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5.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
6.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
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정관)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
2.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

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이사회 등)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) 교육감은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재원조성)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3.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
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9조(예산·결산)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
연도에 따른다.
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
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
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
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·검사)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상황
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
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
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
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된 재단법인
충북교육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, 수혜(受惠) 대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3.>
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설립 목적
 2. 주요 업무와 사업
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